#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52 2021년 07월 02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세열 의원 외 찬성자(28명)

나. 제 안 일 : 2021년 05월 27일

다. 회 부 일: 2021년 06월 01일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세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창의상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상 부문을 조정하여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시민. 공무원(자치구 포함)으로 규정(안 제2조제1호).

- 나. 수상부문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간소화하고 연 1회 시상(안 제3조).
- 다.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안 제5조).
  - 1)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 내용 추가
  - 3) 위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신규위원의 임기 명시
  - 4)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의원, 장기치료, 비밀누설의 경우) 관련 조항 신설
- 라. 서울창의상 선정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제안 규정'상 의 심사기준 반영(안 제10조).
- 마.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 통일(안 별표).
  - 포상금 지급 기준액: 최우수(300만원), 우수(200만원), 장려 (100만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 제안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6. 4. ~ 6. 11.)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을 시민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제2조제1호), 시상부문과 횟수를 간소화 하며(안제3조),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안제5조) 및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안 별표)하려는 것임.
- 동 조례는 서울창의상의 창의제안 및 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으로 구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보상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서울창의상 개요〉

#### □ 수여대상 및 부문

수여대상	창의상 부문
시 민	①창의제안 ②예산절감 ③지식경영(시정연구논문)
공무원 등 (시·자치구 공무원, 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①창의제안 ②제안실행 ③혁신시책 ④상생협력 ⑤예산절감 ⑥지식경영(학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

<sup>※</sup>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서울창의대상 수상기능. 단, 적합한 대상 없을 시 미선정

#### □ 시상등급 및 부상 등

- 시상등급은 창의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
- 상장 수여,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구분		시상등급		비고
丁正	최우수	우수	장려	이프
포상금	5~3백만원	3~2백만원	2~1백만원	· 예산절감 부문은 서울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지급(예산담당관)
공무원 실적가점	0.6	0.4	0.3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부문

- ※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타기관(부서) 등에서 포상금 등 수령 시 미선정 가능
  - 2. 창의상 실적가점 관련 동일실적으로「인사과 실적가점」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전정절차** 

부문별 접수 (부문별 주관부서)

> 창의상 부문별 신청접수

실무위원회 실무심사 (부문별 주관부서)

창의상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선정 및 제출 의견조회·사실조사 (기술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효과성, 추진실적 등 의견조회 및 사실조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사 (사회혁신담당관)

수여대상 및 시상등급 결정

○ 안 제2조제1호는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시민과 공무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 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혀 했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 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 정 안

- 서울창의상의 당초 취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행정 및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증진 및 사기양양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로 규정하였는바,
- 현행 조례에서 포함하는 투자·출연기관 직원(정규직 28,647명, 정원외 직원 1,477명)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벗어난 모호한 기준으로써 이를 제외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 소속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감소하거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제1항은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을 시민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통합하고, 시상부문은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부문으로 간소화 (시민:3개부문, 공무원:6개부문→통합 3개부문)하며, 시상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려는 것임.

	현 행(제3조제	<b>네2항 및 제3항</b> )	개 정 안(제3조제1항)			
수여대상	시상부문	내용	수여대상	시상부문	내용	
	창의제안부문 (연2회)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 에 기여한 시민			창의적	
시민 대상	예산절감부문 (연1회)	창의적 제안 및 예산낭비사 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 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창의제안부문 (공통/연1회)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지식경영부문 (연1회)	시정연구 논문 성과가 우수 한 시민			시민공무원	
	창의제안부문 (연2회)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 에 기여한 공무원 등			채택제안의	
	제안실행 <del>부문</del> (연2회)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시민, 공무원 대상	제안실행부문 (공무원/연1 회)	제국제인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공무원	혁신시책부문 (연2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대상	상생협력부문 (연2회)	업무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예산절감부문 (연1회)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 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			혁신시책부문 (공무원/연1 회)	학년 학년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지식경영부문 (연1회)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학교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	

○ 최근 5년간 서울창의상 수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부문에서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5년간 단 1건도 수상하지 못했고, 공무원의 수상 역시 평균 3건 정도에 불과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예산절감부문(청의적 제안 및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연1회 시상)과 상생협력부문(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 연2회)은 삭제하여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서울시 창의상 수상 현황〉 (단위 : 건)						
						(단위 · 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민	18	17	16	8	6
창의제안	공무원	16	19	16	16	13
	투자출연	1	-	2	2	4
	시민	-	-	-	-	-
제안실행	공무원	28	29	25	18	23
	투자출연	1	2	1	4	3
	시민	-	-	-	-	_
혁신시책	공무원	31	35	34	32	25
	투자출연	3	3	1	1	8
	시민	-	-	-	-	-
상생협력	공무원	16	17	19	9	16
	투자출연	1	2	-	-	1
	시민	-	-	-	-	-
예산절감	공무원	4	3	2	3	3
	투자출연	-	-	_	-	-
	시민	9	9	9	9	9
지식경영	공무원	42	41	42	38	39
	투자출연	2	3	2	4	3

○ 다만, 시민의 경우 현행 예산절감부문 및 지식경영부문의 시민제안 부문을 제외하고 창의제안부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창의상의 시상횟수(연 2회 → 연1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수상기회 제한과 공모 및 시상제도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사기저하 등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정적 판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제도시행에 있어 공무원의 연구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예를 들면, 지식경영부문을 제외하여 공무원들의 학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등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창의상은 2007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제정되어 2013년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로 이관되었고,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수상자명단을 살펴보면, 공무원 1명이 제안실행부문으로 13회를 수상하여 약 1,9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음.

(2013~2020 서울창의상 다회 수상자 내역)						
성명	수상 시기	소속	수상부문	공적 내용	수상 등급	
곽0선	2013 하반기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식경영 (공무원직접수 행학술용역)	수치사진 측량 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방안	장려	
곽0선	2014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시민제안)	도시시설물 측량기록부 개선	장려	
 곽0선	2015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시민제안)	나라사랑과 문화관광을 위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도에 담자	우수	
곽0선	2015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공무원제안)	쪽방촌 안전지대 구축 사업	우수	
곽0선	2015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지식경영 (공무원직접수 행학술용역)	서울시 시계열 공간정보 구축기 반 조성 연구	장려	
곽0선	2016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시민제안)	드론을 활용한 취약지역 생활환 경 정밀지도 제작	우수	
 곽0선	2016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공무원제안)	관심지점 정보는 스마트한 서울 시가 제공하자	우수	
곽0선	2017 상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시민제안)	지하 공공도로(보도) 지도상 표 기제도 도입	우수	
곽0선	2017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시민제안)	서울세계 불꽃축제 관람하기 좋 은 장소 서비스	장려	
곽0선	2017 하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지식경영 (공무원 시정연 구논문)	시민참여형 전자정부를 위한 서 울시 공간정보체계 활용 방안	장려	
곽0선	2018 상반기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제안실행 (시민제안)	글로벌 명품거리 다국어 지도 서 비스	장려	

곽0선	2018 상반기	-	제안실행 (공무원제안)	공간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주변 지역자원 조사	장려
곽0선	2018 하반기	·	제안실행 (시민제안)	서울지역 상권영역 전자도면 제 작·활용	우수

- 서울창의상 다회 수상에 따른 제한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채 택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 제5조는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창의상 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 해제 조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혀 행 개 정 안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 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 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

로 한다.

<신 설>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는 경우
- 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사절차 상 담당부서에서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 및 제15조는 창의상 추천 및 선정시 고려해야 하는 심사기준 사항을 변경(7가지→5가지)하고,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혀 했 개 정 안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 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1. 창의성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15조(관리) ① (생 략) 제15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제안규정」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 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존·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 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제10조)의 심사기준 중 '경제성'과 '협력성' 삭제는 '경제성'은 개정안 제3호 '효율성 및 효과성'으로 포괄하고, '협력성'은 창의상 시상부문에서 '상생협력부문'을 삭제함으로써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여짐.

〈서울창의상 선정기준〉								
						지식경영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예산절감	학습동아리	시정연구 논 문	공무원직접 수행학술용역	
<ul> <li>창 의 성</li> <li>(30%)</li> <li>효 과 성</li> <li>(30%)</li> <li>실현가능성</li> <li>(40%)</li> </ul>	◦ 창의성(30%) ◦ 효과성(30%) ◦ 난이도(20%) ◦ 계속성(10%) ◦ 적용범위(10%)	∘ 창의성(30%) ∘ 효과성(30%) ∘ 난이도(20%) ∘ 계속성(20%)	∘ 협력성(30%) ∘ 효과성(30%) ∘ 난이도(20%) ∘ 계속성(20%)	· 창의성(30%)         · 노력도(30%)         ·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 본연의 업무(20%)	○ 과제 적정성 (20%) ○ 수행 노력도 (20%) ○ 창의성(30%) ○ 실용성(30%)	∘ 독창성30%) ∘ 실용성50%) ∘ 연구노략도20%)	· 연구과제         창의성30%         · 연구내용         충실성30%         · 연구성과         시책활용도         (40%)	

○ 안 제10조 및 제15조제2항은 상위법인 「공무원 제안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채택제안의 효율적 실행 관리, 중복제안 관리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 공무원 제안 규정 >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 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실시 가능성
- 2. 창의성
- 3. 효율성 및 효과성
- 4. 적용 범위
- 5. 계속성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u>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안 별표는 안 제3조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통일(최우수 3백만원, 우수 2백만원, 장려 1백만원)하려는 것으로, 삭제된 부문의 포상금도 함께 삭제하고 '채택제안'의 경우 2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서울기	창의상 포상금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단위 : 천욱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T0410	丁正己	최우수	우 수	장 려	T6416		<b>一工</b> 三	최우수	우 수	장 려
	창의제안	<u>5,000</u>	3,000	2,000		;	창의제안	<u>3,000</u>	<u>2,000</u>	<u>1,000</u>
시 민	<u>지식경영</u>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시 민		<삭제>	_	_	_
시 전	<u>서울창의</u> <u>대 상</u>		10,000		시 긴		<삭제>		_	
	예산절감		별시 예산/ 에 의거하			<삭제>		-		
	창의제안	3,000	2,000	1,000		;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u>5,000</u>	3,000	2,000			혁신시책	3,000	2,000	<u>1,000</u>
	상생협력 최 스	5,000	3,000	2,000			<삭제>	_	_	_
<u>시·자치구</u> 공무원	<u>학 습</u> 동아리	3,000	2,000	<u>1,000</u>	시·자치구		<u>&lt;삭제&gt;</u>	_	_	_
<u>투자출연기관</u> <u>직원</u>	지식 경영 <u>시정연구</u> 논문				공무원	<u>&lt;삭</u> 제>	<u>&lt;삭제&gt;</u>			
	<u>공</u> 무원직접 <u>수행학술</u> <u>용역</u>	3,000	<u>2,000</u>	1,000		<u> </u>	<u>&lt;삭제&gt;</u>	_	_	_
	<u>서울창의</u> 대 상		10,000				<삭제>		_	
시 공무원	시 공무원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u>&lt;</u> 삭제>		<삭제>		<삭제>		
	:에서 정한 부문별 포 H택제안"의 경우 200,0				※ 포상금은 위 표( < <u>삭제&gt;</u>	에서 정한	한 부문별 포상금	H의 범위 안0 	세서 지급함.	

○ 한편, '채택제안'은 서울창의상이 운영된 이후 단 1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는바, 별표의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창의제안이나 혁신시책의 경우, 포상금을 축소하는 것이 적극적인 제안의 유인효과를 감소시킬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세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2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세열 의원(1명) 찬 성 자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서울창의상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상부문을 조정하여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시민, 공무 원(자치구 포함)으로 규정(안 제2조제1호).
- 나. 수상부문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간소화하고 연 1회 시상(안 제3조).

- 다.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안 제5조).
  - 1)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 내용 추가
  - 3)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신규위원의 임기 명시
  - 4)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의원, 장기치료, 비밀누설의 경우) 관련 조항 신설
- 라. 서울창의상 선정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제안 규정'상의 심사기준 반영(안 제10조).
- 마.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 통일(안 별표).
  - 포상금 지급 기준액: 최우수(300만원), 우수(200만원), 장려 (100만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 제안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 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이 하 '공무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하며,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
  -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 2. 제안실행부문: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3. 혁신시책부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제4조제1항 중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는"을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을 "서울창의상 수상자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를 "서울창의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 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로 하며,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창의성
- 2. 실현가능성
- 3. 효율성 및 효과성
- 4. 적용범위
- 5. 계속성

제12조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제3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lr∥∧l	<b>u</b> 0		포 상 금	
ТЗЧЗ	수상대상 부 문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시·자치구 공무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3,000	2,000	1,000

<sup>※</sup>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 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서울 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 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 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 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

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 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안

개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제안"이라 시민·단체(이하 "시민"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 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 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제3조(서울창의상 시상부문 및 수여대 ①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

상) 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 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하 며,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

-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 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 2. 제안실행부문: 채택제안의 적극적 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u> </u>	7II TI OI
현 행	개 정 안
	3. 혁신시책부문: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②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u>&lt;삭 제&gt;</u>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u>같다.</u>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	
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연2회)	
2. 예산절감부문: 창의적 제안 및 예	
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	
<u>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연1회)</u>	
3. 지식경영부문: 시정연구 논문 성과	
가 우수한 시민(연1회)	
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	<u>&lt;삭 제&gt;</u>
<u>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u>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u> </u>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2. 제안실행부문 : 채택제안의 적극적	<u> </u>
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u>공무원 등(연2회)</u>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u>&lt;삭 제&gt;</u>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	
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u>(연2회)</u>	
4. 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	<삭 제>
 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	
 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5.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업무수행으	<삭 제>
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	

현 행	개 정 안
한 시의 공무원(연1회)	
6.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	<u>&lt;</u> 삭 제>
논문(연1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	
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u> &lt;삭 제&gt;</u>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	
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	
할 수 있고, 시상주기는 연1회로	
<u>한다.</u>	
⑤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
분야,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분야,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① <u>서울창의상의</u>	제4조(수상자 선정) ① <u>서울창의상의</u>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	<u>부문별 수상자는</u> 제5조에 따른 서울
<u>자는</u> 제5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	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정한다.
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	② 서울창의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
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	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
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	니할 수 있다.
다.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생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	1. 서울창의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정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u>에 대하</u>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

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

현 행	개 정 안
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이 되도록 한다.	<u>당연직 위원이 되고,</u>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u>할 수 있다.</u>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신 설>	<u>기간으로 한다.</u>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
<u> </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속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	<u>1. 창의성</u>

현 행	개 정 안
성, 적용범위, 경제성, 협력성 등을	<u>2</u> . 실현가능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u>3. 효율성 및 효과성</u>
	4. 적용범위
	<u>5. 계속성</u>
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u>제3조</u>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u>제3조</u>
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 ① (생 략)	제15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제안규정」제9조의2에 따라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	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
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
	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
	여야 한다.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다의 : 처워)	(다의 : 처워)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Тача	<b>十七</b> 章	최우수	우 수	장 려			
	창의제안	5,000	3,000	2,000			
ון דו	<u>지식경영</u> (시정연구논문)	5,000	5,000 3,000				
시 민	<u>서울창의</u> <u>대 상</u>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금					
<u>시·자치구</u> 공무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u>투자·출연기관</u> <u>직원</u>	제안실행	3,000	1,000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T6416	十正宣	최우수	우 수	장 려				
	창의제안	<u>3,000</u>	2,000	<u>1,000</u>				
n) m)	<u>&lt;삭제&gt;</u>	_						
시 민	<삭제>	_						
	<삭제>	-						
시·자치구	창의제안	3,000 2,000		1,000				
<u>공무원</u>	제안실행	3,000	3,000 2,000 1					

		현	행					개	정	안			
	혁신시책		5,000	3,000	2,000		혁신시책		3,000	2,000	1,000		
	<u> 상생협력</u>		5,000	3,000	2,000		<삭제>		_	_	-		
		<u>학 습</u> 동아리	3,000	2,000	1,000			<	삭제>	_	_	_	
	<u>지식</u> 경영		<u>시정연구</u> <u>논문</u>					<u>&lt;삭</u> 제>	<	삭제>			
<u>′6</u>		<u>공무원직접</u> <u>수행학술</u> <u>용역</u>	3,000	3,000 2,000	1,000			<	삭제>	_	_	_	
	<u>서울창의</u> <u>대 상</u>		10,000			<u>&lt;</u> 삭제>		-					
시 공무원	-	예산절감 <u></u>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u>&lt;삭제&gt;</u>	<삭제>		<삭제>					

<u>※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u> <삭제>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